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
e-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및 대규모기업 지원율 집행
업무처리기준 알림

1 '20년도 컨소시엄 회계정산시 e-나라도움 시스템 활용

□ 안내 사항

○ '20년도부터는 기존 활용하던 지원금 관리시스템 사용 중지

○ '**비예치형**' 방식으로 '**e나라도움 시스템**'을 정부가 전면 도입함에 **따라** 이미 활용 중에 있는 사업등록, 교부관리, 집행등록에 더하여 **회계정산, 정보공시까지도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등재**

- (업무매뉴얼)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에 따른 **업무매뉴얼은 공동훈련센터에 메일링 서비스로 배포 완료(4건)***

* ①2019년 e나라도움 정산안내, ②2020년 e나라도움 사업등록, ③집행등록, ④정보공시

○ '20년 컨소시엄사업 '**회계정산**'도 **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**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회계정산 업무매뉴얼도 메일링서비스 예정

- 코로나 사태 종료 이후, 공동훈련센터 회계정산 담당자 e나라도움시스템 활용 집체 교육 실시 예정

2 전략 분야 대규모기업 지원율 차등 지원 관련

□ 대규모기업 지원율 변경내용

○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하여 '승인인원'에 따른 정부지원금 지원율 조정

- **(실비 방식)** 승인된 '훈련정원' 기준으로 1인 시간당 지원단가를 산출 후,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지원율 80%까지 지원하고, 훈련 미참여, 중도탈락 등으로 발생하는 차익금에 대한 불이익은 지원금으로 충원(사전 수령한 부담금 부족분은 반납금액에서 지원)
- 협약기업 근로자 대상 훈련과정 홍보 시 대규모기업 부담금을 공지할 수 있도록 사전금액* 확정

  * 정부지원금 = 과정운영비 ÷ 승인(정원)인원 × 80%,
  대규모기업 훈련생 부담금 = 과정운영비 ÷ 승인(정원)인원 × 20%

<예시1>
(실비과정) A과정운영비 승인금액 2,000,000원, 훈련생 정원 20명 (우선지원대상 10명, 대규모기업 10명), A과정 실비 집행금액이 1,800,000원인 경우,
→ 지원금액 : 우선지원대상 (10명, 900,000원), 대규모 기업(10명, 720,000원 (900,000원의 80%))
→ 최종 지원훈련비 1,620,000원 (미집행 200,000원과 부담금액 20% 훈련비 180,000원 반납)

<예시2>
(실비과정) A과정운영비 승인금액 6,000,000원, 훈련정원 20명,
실시신고인원 18명(우선지원대상 12명, 대규모기업 6명),

A과정 실비 집행금액이 5,500,000원인 경우,
→ 정부지원금(5,133,333원, a) = 우선지원(12명, 3,666,667원)+대규모(6명, 1,466,667원)
→ 대규모 부담금(360,000원, b) = 승인금액 6,000,000원 ÷ 정원 20명 × 20% × 수료인원 6명
→ 기관수익금 차액(6,667원, c) = 5,500,000원-5,133,333원(a)-360,000원(b)
→ 최종 기관 반납금(853,333원) = 집행잔액 500,000원+360,000원(b)-6,667원(c)

※ [붙임 2] 대규모 기업 지원율 차등 지원 관련 자부담액 산출 참조

- **(실비단가 방식)** 승인된 '훈련정원' 기준으로 1인 시간당 지원단가를 산출 후,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지원율 80%까지 지원
- 회계정산 시, 실제 '수료인원' 기준으로 1인 시간당 지원단가를 재산출 후 정산

* 정부지원금 = (과정운영비 ÷ 승인(정원)인원 × 80%) × 수료인원
대규모기업 부담금 = (과정운영비 ÷ 승인(정원)인원 × 20%) × 수료인원

3 과정심사시 시간단위로만 훈련시간 작성 안내 및 심사기준 반영

□ 주요 질의내용

○ (현황) 컨소시엄 훈련과정 심사 시 시간단위로만 훈련시간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심사기준에 반영해달라는 공동훈련센터 요청 접수

□ 질의에 따른 안내사항

○ 전자시간표 활용 알림

- 컨소시엄 훈련과정 설계 시 훈련시간에 대한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훈련시간 등 관련 자료를 안내하오니 훈련과정 설계 및 시간표 작성시 참고 요망**(훈련시간은 시간단위로 입력)**

1. 컨소시엄사업 신규 전자시간표 활용 매뉴얼

☞ "HRD-Net – 공통업무 – 공지사항 – 메인공지사항" 매뉴얼 참조

※ 검색창에 '시간표' 입력 후 검색

☞ 경북지사 홈페이지http://gyeongbuk.hrdkorea.or.kr – 중소기업지원사업 – 사업주훈련지원 게시판 "통합심사과정 시간표 전산화 전면 시행 관련 매뉴얼"

2. 훈련 휴식시간의 인정범위

☞ 「2019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매뉴얼」, 8. 훈련생출결관리, 96페이지 참조

- 훈련과정인정 시 훈련시간은 시간단위로 인정가능
- 1일의 훈련시간이 2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경우, 각 시간별 휴식시간 10분 부여 가능(부여하지 않아도 무방)하며, 매 훈련일의 마지막 시간은 휴식시간을 인정하지 않음

※ 매 훈련일의 마지막 10분전 퇴실한 훈련생의 출결처리는 조퇴처리 되지는 않으나, 훈련출석시간으로 산입되지 않음

예 훈련기관에서 10분 간 휴식시간 없이 1일 150분 훈련을 5일 진행한다고 하여 훈련시간을 1일 3시간(총 15시간)으로 인정신청 하였을 경우, 전체 훈련시간이 150분×5일로 총 750분(12시간 30분)이므로 **12시간만 훈련시간으로 인정 가능**